

# 평창군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 안 번 호	143
------------	-----

제출년월일 : 2005. 2.  
제 출 자 : 평 창 군 수

## 1. 제안이유

2001년 1월 13일 시행된 장사등에관한법률(이하 "법률"이라한다) 및 동법시행령에서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위임한 사항과 평창군공설묘지관리및사용조례를 통폐합하여 평창군장사시설의설치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 2. 주요골자

### 가. 묘지등의 수급계획 수립(안 제4조)

- 군수는 법제5조 및 영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립된 강원도 묘지 등 수급 계획에 맞추어 관할 구역안의 장사시설의 중장기 수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중장기수급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때에 전문연구기관에 기초자료의 수집·조사 및 분석 등을 의뢰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안에서 이에 소요되는 경비를 지급 할 수 있다.

### 나. 개인묘지 및 납골시설의 설치장소 지정(안 제5조)

- 개인묘지는 도로·철도·하천 또는 그 예정지역으로부터 300m이상, 20호 이상의 인가가 밀집한 지역, 학교 그 밖에 공중이 수시 집합하는 시설 또는 장소로부터 500m이상 떨어진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토지나 지형의 상황을 감안하여 군수가 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 납골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장소 중에서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가 정하는 장소라 함은 도로.철도.하천으로부터 200m, 20호 이상의 인가가 밀집한 지역, 학교 그 밖에 공중이 수시 집합하는 시설 또는 장소로부터 300m이상 떨어진 곳을 말한다. 다만, 토지나 지형의 상황에 의하여 지장이 없는 경우로써 시계가 상당부분 차단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다. 묘지 등의 설치제한지역(제6조)

- 법 제15조 및 영 제14조 제2항 제9호에서 붕괴·침수 등으로 인하여 보건 위생상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지역으로서 장사시설의 설치를 제한 할 수 있는 지역은 다음 각호와 같다.
- 자연재해대책법 규정에 의하여 군수가 지정·관리하는 재해위험지구. 다만, 「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 규정에 의한 재해심사를 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최근 5년이내에 산사태·침수 등의 재해가 발생되었던 지역으로서 항구적인 안전대책이 강구되지 아니한 지역
- 기타 산등성이나 급경사지로 붕괴우려 등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는 지역

라. 공설장사시설의 효율적 설치·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민간자본을 유치 할 수 있다.(제8조)

마. 제3장 공설장사시설의 설치운영은 기존의 평창군공설묘지관리및사용조례안 내용과 동일하고, 단 사용기간은 동조례 제7조 분묘의 설치기간을 신설하며, 또한 공설장사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권한의 일부를 읍·면장에게 위임함을 신설한다.(제28조)

바. 다른조례의 개정(부칙 제2조)

- 평창군사무위임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별표(위임사무명) 일련번호 28다음에 "29"로, 사무명은 "읍면(마을) 공동묘지 사용허가"로, 근거법령은 "평창군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제28조"로 한다.

가. 관계법령 : 붙임

나. 예산조치 : 해당없음

다. 관계부처승인 : 해당없음.

라. 입법예고 : 평창군공고 2005-14(2005.1.7)

마. 신구조문대비표 : 해당없음

바. 규제개혁심사 : 규제개혁심사 필

## 평창군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사등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장사등에관한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한 사항과 평창군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장사시설"이라 함은 묘지·남골시설·화장장 및 이에 부속된 시설을 말한다.
2. "공설공원묘지"라 함은 평창군(이하 "군"이라 한다)에서 일정한 구역에 단지를 조성하여 사용하는 묘지를 말한다.
3. "공설공동묘지"라 함은 장사시설중 사전에 체계적으로 조성하지 아니하고 자연 발생적으로 무질서하게 사용하고 있는 집단묘지로 현재 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묘지를 말한다.
4. 공공묘지의 재개발·공원화사업 이라 함은 만장되었거나 관리상태가 부실한 공설 공원 공동묘지를 수려하고 환경 친화적인 장사시설로 변모시켜 주민에게 선진·현대화된 장사시설의 공급과 휴식공간을 제공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 (장사문화 개선 등)** 평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바람직한 장사문화 개선을 위해 다음 각호의 시책을 강구·시행하여야 한다.

1. 관할 구역안의 장사시설 안정적 공급 및 시설 수준의 제고
2. 화장·남골의 확산과 건전한 장사문화 정착을 위한 교육·홍보활동의 전개
3. 분묘 규모의 최소화 및 평분의 유도
4. 선진 현대화된 장사시설 공급을 위한 기존 공설묘지의 재개발·공원화 추진

**제4조 (묘지 등의 수급계획)** ①군수는 법 제5조 및 영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립된 강원도 묘지 등 수급계획에 맞추어 관할 구역안의 장사시설의 중·장기수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장사시설의 중·장기수급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때에는 필요한 경우 전문연구기관에 기초자료의 수집·조사 및 분석 등을 의뢰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안에서 이에 소요되는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③군수는 관할 구역안의 장사시설의 중·장기수급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였을 경우에는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2장 장사시설

제5조 (개인묘지 및 납골시설의 설치장소) ① 영 제11조 별표2에서 개인묘지는 도로 · 철도 · 하천 또는 그 예정지역으로부터 300미터 이상, 20호 이상의 인가가 밀집한 지역, 학교 그 밖에 공중이 수시 집합하는 시설 또는 장소로부터 500미터이상 떨어진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토지나 지형의 상황을 감안하여 군수가 정하는 경우라 함은 아래와 같다.

1. 제1항의 시설 및 장소로부터 지장이 없는 경우로서 시계가 상당부분 차단되어 있는 경우

2. 군정책결정사항으로 군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정한 경우

② 영 제7조의2 별표1 및 제13조 별표3에서 납골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장소 중에서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장소라 함은 도로 · 철도 · 하천으로부터 200미터이상, 20호 이상의 인가가 밀집한 지역, 학교 그 밖에 공중이 수시 집합하는 시설 또는 장소로부터 300미터이상 떨어진 곳을 말한다. 다만, 토지나 지형의 상황에 의하여 지장이 없는 경우로써 시계가 상당부분 차단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도로는 도로법 제2조 및 제11조 등의 규정에 의한 도로(군도이상의 도로)며, 하천은 하천법 제2조 및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2급하천 이상의 하천을 말한다.

제6조 (묘지 등의 설치제한지역) 법 제15조 및 영 제14조제2항제9호에서 붕괴 · 침수 등으로 인하여 보건위생상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지역으로서 장사시설의 설치를 제한할 수 있는 지역이라 함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자연재해대책법 규정에 의하여 군수가 지정 · 관리하는 재해위험지구. 다만, 「환경 · 교통 · 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규정에 의한 재해심사를 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2. 최근 5년이내에 산사태 · 침수 등의 재해가 발생되었던 지역으로서 항구적인 안전대책이 강구되지 아니한 지역
3. 기타 산등성이나 급경사지로 군수가 붕괴우려 등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는 지역

제7조(분묘의 설치기간) ① 법 제17조의 규정에 의거 분묘의 설치기간은 15년으로 한다.

② 분묘의 설치기간 연장은 15년씩 3회에 한하여 가능하며 설치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분묘의 설치기간 만료일부터 3월 이내에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분묘를 개장하여 재매장할 때에는 종전 위치에서의 설치기간과 현 위치에서의 설치기간을 합산하고 합장분묘의 경우에는 합장된 날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제8조(민간자본의 유치)** ①군수는 공설장사시설의 효율적인 설치·관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민간자본을 유치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민간자본을 유치하는 경우에는 자본을 투자하는 자와 투자의 규모·비율, 시설의 설치공사 시행 및 준공후의 관리 등에 관하여 구체적인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 제3장 공설장사시설의 설치·운영

**제9조(명칭 및 위치)** 공설장사시설의 종류별 명칭·소재지 등은 별표1과 같다.

**제10조 (사용자의 범위)** 공설장사시설을 사용 할 수 있는 자의 자격은 다음 각 호의 1과 같다.

1. 평창군에 주소를 두고 사망한 자 또는 평창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연고자(다만, 연고자의 범위는 직계존·비속에 한함)
2. 타지역에서 사망하였으나 평창군공설묘지에 가족(직계존·비속)이 매장되어 있는자
3. 공공의 목적으로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평창군관내 사업장내의 분묘에서 발굴 된 유골의 매장을 원할 때
4. 평창군 관내에서 사망한 외국인 및 무연고 행려사망자
5.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토지기부채납자 등)

**제11조(묘지의 면적)** 공설장사시설에 설치하는 분묘 1기당 기본점유면적은 6.75제곱미터( $1.5m \times 4.5m$ )로 하고 합장하는 경우에는 1기당 기본점유면적의 2분의 1 범위내에서 초과 사용 할 수 있다.

**제12조(분묘의 구조등)** ①분묘의 구조는 군수가 정한 구조로 설치하여야 하며 매장분묘의 형태는 평분형으로 한다.

②분묘의 묘비등 석물의 종류, 모형, 규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3조(사용허가 등)** ① 공설장사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군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개장을 명할 수 있다.

- 법률 또는 이 조례의 규정에 위반하였을 때
- 군수가 공공시설의 설치 및 지역개발사업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 할 때

**제14조(사용권의 소멸)**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권이 소멸된다.

- 사용허가일로부터 1개월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장사시설을 사용하지 아니 한 경우
  - 정당한 사유없이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재사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3회 연장 사용기간이 만료 된 경우
- ② 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권이 소멸된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15조(사용권의 양도금지)** 표지의 사용권은 상속으로 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타인에게 전매 또는 양도하지 못한다.

**제16조(사용료 등)** ① 장사시설의 사용료 및 관리비(이하 '사용료 등' 이라 한다)는 별표2와 같다. 단, 사용료 등은 최초 사용허가 또는 기간연장 허가 신청시 납부 하여야 한다.(단, 납부된 사용료 등은 허가 완료된 후에는 일체 반환하지 아니한다)

② 공설묘지 주변 지가변동 및 물가상승율, 경제여건 등을 고려하여 사용료 등을 조정 할 수 있다.

③ 군수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규정한 사용료 등을 감면 할 수 있다.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5조 규정에 의한 수급자 및 시설보호대상자
-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국가유공자
- 무연고 행여사망자
- 사용료 등을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자.

**제17조(사용자의 신고의무)** 장사시설 사용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사용자의 주소가 변경 된 경우
- 상속권자가 사용권을 승계한 경우

**제18조(수거 및 개장명령 등)** ① 군수는 제13조 및 제14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허가의 취소 또는 사용권이 소멸한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유골을 수거하거나 분묘를 개장할 것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수거 또는 개장

하지 않을 경우에는 법 제18조 제2항 내지 제3항 및 동시행규칙 제12조 제1항 규정에 의거 조치하기 3개월전에 사용자에게 처리방법 및 절차에 대해 통보 후 개장 처리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개장시에 소요되는 비용을 사용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제19조(원상복구 및 실비변상)** ①군수는 사용자가 공설장사시설내의 시설물을 훼손한 경우에는 시설물의 원상복구를 명하거나 원상복구에 필요한 실비의 변상을 명 할 수 있다.

②유골을 수거하거나 분묘를 개장 할 때에도 원상복구 하여야 하며, 원상복구를 하지 않을 때에는 원상복구에 필요한 실비의 보상을 요구할 수 있다.

**제20조(위탁운영)** 군수는 공설장사시설내 시설의 일부를 개인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21조(수탁자의 의무)** ①수탁자는 위탁운영 기간중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 하여야 한다.

②수탁자는 관계법령 및 이 조례에 의한 준수사항과 군수의 업무상 지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22조(위탁의 취소등)** 군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탁을 취소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수탁자의 의무를 위반 하였을 경우
2. 수탁자가 수탁조건을 위반하였을 경우
3. 수탁자에게 운영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기타 공익상 위탁운영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23조(관리사무소설치)** 묘지조성과 관리를 위하여 평창군공설묘지관리사업소를 설치 할 수 있으며, 그 조직과 정원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24조(운영위원회)** ①장사시설 사용 및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 · 결정하기위하여 평창군장사시설관리운영위원회(이하'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운영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 · 조정 한다

1. 공설묘지와 관련한 사업계획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의 자격 결정에 관한 사항

3. 제16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 등의 조정 및 감면액의 결정에 관한 사항

4. 기타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③운영위원회는 별도로 구성하지 아니하고 평창군군정조정위원회가 이를 대행하도록 한다.

**제25조(금지행위)** 묘역 내에서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매장된 시체나 유골 및 시설물을 훼손하는 행위
2. 제사참배를 방해하거나 지장을 초래하는 행위
3. 기존 시설물을 임의로 교체하거나 추가로 시설물을 설치하는 행위
4. 묘역 안에서 경관을 해치거나 방화의 우려가 있는 행위
5. 묘역 안에서 취사를 하는 행위
6. 일몰 후 참배하는 행위
7. 고성방가, 난동, 음주 등 미풍양속을 해하는 행위

**제26조(묘적부등)** 군수는 공설장사시설 사용자와 사망자와의 관계 등을 기록한 묘적부 및 납골부를 비치 관리하여야 한다.

**제27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 한 것을 제외하고는 「장사등에관한법률」을 준용한다.

**제28조(권한위임)** 군수는 공설장사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권한의 일부를 읍·면장에게 위임한다.

**제2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평창군사무위임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하다.

제2조 별표(위임사무명) 일련번호 28 다음에 "29"로 사무명은 "읍면(마을) 공동묘지 사용허가"로, 근거법령은 "평창군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8조"로 한다.

**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행하여진 것과 진행 중인 사항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4조(다른조례의 폐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평창군공설묘지관리및사용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 【별표1】

**평창군공설장사시설의 명칭과 위치(제9조관련)**

## □ 평창군공설묘지

명 칭	위 치	면 적(m <sup>2</sup> )
평창군 공설묘지	평창군 방림면 방림리 산 692번지	25,678
평창군 공설납골단	평창군 방림면 방림리 산 692번지	330

## □ 읍·면(마을) 공동묘지

명 칭	위 치	면 적(m <sup>2</sup> )
평창읍 공동묘지	평창읍 중리 산 11-1번지	9,917.4
	평창읍 노론리 산 84번지	13,223
	평창읍 조동리 산 15번지	8,264.5
	평창읍 약수리 산 7번지	3,669
	평창읍 조둔리 산 73번지	6,611.6
	평창읍 도돈리 산 5번지	2,579
	평창읍 마지1리 산86번지	331
	평창읍 여만리 산 18번지	3,967
	평창읍 후평리 산 7번지	1,652.9
	평창읍 후평리 산 48번지	1,652.9
	평창읍 다수리 산 28번지	1,726
	평창읍 주진리 산 195번지	4,661
	평창읍 용항리 산 78번지	2,083
미탄면 공동묘지	미탄면 창2리 산 46번지	201,813
	미탄면 창3리 산 2-1번지	32,066
	미탄면 율치리 산 59번지	3,273
	미탄면 평안1리 산 74-1번지	409,488
	미탄면 기화리 산 43번지	4,463

명 칭	위 치	면 적(m <sup>2</sup> )
방림면 공동묘지	방림면 방림리 산 145번지	1,785
대화면 공동묘지	대화면 상안미2리 산 571-1번지	5,488
봉평면 공동묘지	봉평면 평촌2리 산 40번지	19,834
	봉평면 유포2리 산 398번지	9,917.4
	봉평면 흥정리 산 13번지	7,240
	봉평면 유포1리 산 89번지	5,355
	봉평면 원길1리 산 249-1	14,876
	봉평면 덕거2리 산 173번지	19,834
용평면 공동묘지	용평면 속사2리 산 128-1	14,281
	용평면 노동리 산 175번지	3,372
	용평면 백옥포리 산 28번지	2,642
진부면 공동묘지	진부면 하진부5리 산 3번지	24,793
	진부면 하진부6리 산 16번지	46,017
	진부면 상진부2리 산 27번지	8,179
	진부면 송정2리 산 309번지	14,083
	진부면 두일리 산 66번지	11,207
	진부면 거문리 산 84번지	7,676
	진부면 신기리 산 23번지	3,669
	진부면 마평리 묘지 37번지	5,928
도암면 공동묘지	도암면 용산리 산 229번지	3,305.8

## 【별표 2】

## 장사시설의 사용료 등(제16조제1항관련)

## □ 평창군공설묘지(방림면 방림리 산 692번지)

(단위 : 원)

구 분	기 준	계	사 용 료	관 리 비
분 묘 (매장)	2평형 단장 (6.75m <sup>2</sup> )	987,000	747,000	240,000
	3평형 합장 (9.9m <sup>2</sup> )	1,455,000	1,095,000	360,000
납골단	1구당	166,000	166,000	

※ 사용년한 : 15년 사용기준임.

## □ 읍 · 면(마을) 공동묘지

(단위 : 원)

구 分	기 준	계	사 용 료	관 리 비
분 묘 (매장)	2평형 단장 (6.75m <sup>2</sup> )	4,000	4,000	
	3평형 합장 (9.9m <sup>2</sup> )	6,000	6,000	

# 관 계 법령 발췌

## □ 장사등에관한법률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묘지의 증가로 인한 국토의 훼손을 방지하기 위하여 화장 및 납골의 확산을 위한 시책을 강구·시행하여야 한다.

제5조(묘지 등의 수급계획 수립) ① ~ 군수·구청장은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구역안의 묘지·화장장 및 납골시설의 수급에 관한 중·장기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동법시행령 제3조(묘지 등의 수급계획) ③이 영에서 정한 것 외에 시군구묘지등 수급계획의 수립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군구의 조례로 정한다.

제13조(사설묘지의 설치등) ⑥사설묘지의 설치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동법시행령 제11조(사설묘지의 설치기준) 법 제13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사설묘지의 설치기준은 별표 2와 같다.

### 1. 개인묘지

라. 묘지는 도로·철도·하천 또는 그 예정지역으로부터 300미터 이상, 20호 이상의 인구가 밀집한 지역, 학교 그밖에 공중이 수시 집합하는 시설 또는 장소로부터 500미터 이상 떨어진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토지나 지형의 상황을 감안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이 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14조(사설화장 등의 설치) ③사설화장장 및 사설납골시설의 설치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동법시행령제13조(사설화장장 등의 설치기준 등) ①법 제1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사설화장장 및 사설납골시설의 설치기준은 별표3과 같다.

### 2. 사설납골시설

납골묘·납골탑·납골당는 사원·묘지·화장장 그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제17조(분묘의 설치기간) ①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공설묘지 및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사설묘지에 설치된 분묘의 설치기간은 15년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설치기간이 경과한 분묘의 연고자가 군수에게 당해 설치기간의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5년씩 3회에 한하여 당해 설치기간을 연장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설치기간을 산정함에 있어서 합장분묘의 경우에는 합장된 날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④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군수는 관할 구역안의 묘지의 수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5년이상 15년 미만의 기간 내에서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분묘 설치기간의 연장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⑤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분묘 설치기간의 연장신청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 장사동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11조(분묘 설치기간 연장신청 등) ① 설치기간이 경과한 분묘의 연고자가 법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묘의 설치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분묘의 설치기간 만료일로부터 3월이내에 별지 제16호서식에 묘지소재지를 파악할 수 있는 위치도(약도) 또는 사진을 첨부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제18조(설치기간이 종료된 분묘의 처리) ①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설치기간이 종료된 분묘의 연고자는 설치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1년이내에 당해 분묘에 설치된 시설물을 철거하고 매장된 유골을 화장 또는 납골하여야 한다.

② 공설묘지 또는 사설묘지의 설치자는 연고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철거 및 화장·납골을 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당해 분묘에 설치된 시설물을 철거하고 매장된 유골을 화장하여 일정기간 이를 납골할 수 있다.

③ 공설묘지 또는 사설묘지의 설치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기간을 정하여 당해 분묘의 연고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연고자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뜻을 공고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 및 공고의 기간·방법·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⑤ 제11조제3항의 규정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납골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 장사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12조(설치기간이 종료된 분묘의 처리방법) ①법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설묘지 또는 사설묘지의 설치자가 설치기간이 종료된 분묘의 처리를 하는 경우의 그 통보 및 공고기간·방법·절차 등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연고자를 알고있는 경우 : 법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하기 3월전에 다음 각목의 사항을 문서로 표시하여 당해 분묘의 연고자에게 통보할 것

- 가. 묘지 또는 분묘의 위치 및 장소
- 나. 개장사유, 개장후 안치장소 및 기간
- 다. 공설묘지 또는 사설묘지 설치자의 성명·주소 및 연락방법
- 라. 그 밖의 개장에 필요한 사항

2. 묘지연고자를 알 수 없는 경우 : 법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하기 3개월전에 중앙일간신문을 포함한 2 이상의 일간신문에 제1호 각목의 내용을 공고하고, 공고일부터 1월이 지난 다음 재공고할 것.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설묘지설치자가 제2조 제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장의 신고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서면통보문 또는 신문 공고문을 첨부하여야 한다.